

2023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

## 전통기술분과 제5차 회의록

- ▣ 회의일시 : 2023. 11. 2.(목), 13:30
- ▣ 장 소 :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
- ▣ 출석위원 : 김삼기(위원장), 김정희, 서도식, 신타근,  
임승택, 장남원, 진명(정혜린)
- ▣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: 이하 자료와 같음

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

1.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됩니다.

제1호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,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제2호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)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제3호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제4호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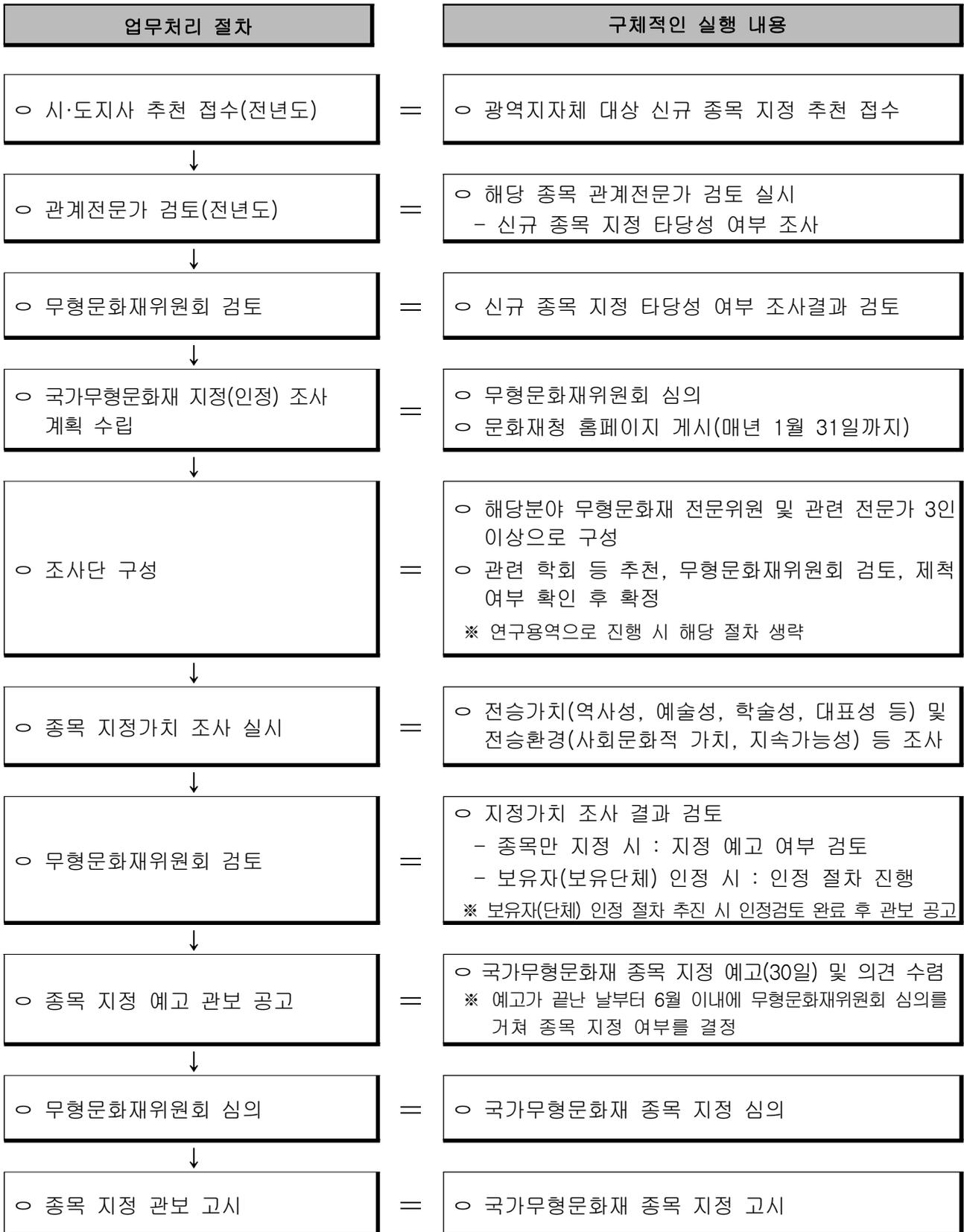
아울러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

위원은 위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 해당 시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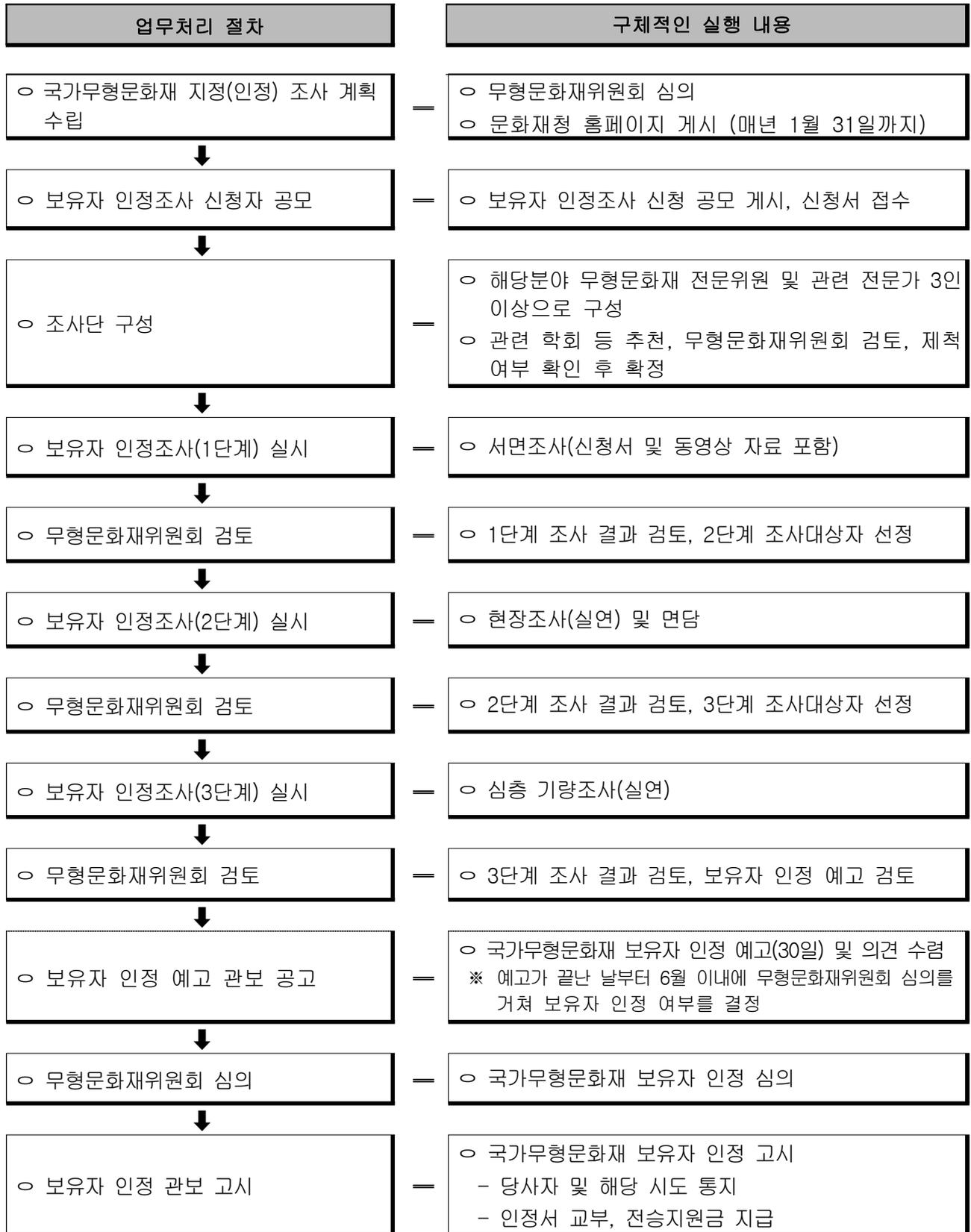
2. 또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·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.

3. 아울러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,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.

#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업무 절차



# 국 가 무 형 문 화 재 보 유 자 인 정 업 무 절 차



# 목 차

## 【심의사항】

1

국가무형문화재 ‘악기장(현악기 제작)’ 보유자 인정 심의

3

# 심 의 사 항

## 1. 국가무형문화재 ‘악기장(현악기 제작)’ 보유자 인정 심의

### 가. 제안사항

국가무형문화재 ‘악기장(현악기 제작)’ 보유자 인정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제안사유

- 2023년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기술분과 제4차 회의(2023.7.13.)에서 국가무형문화재 ‘악기장(현악기 제작)’ 보유자 인정 심의 중 보류되었던 조준석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완료되어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

### 다. 주요내용

#### 1) 지정현황

- 지정명칭 : 국가무형문화재 ‘악기장(현악기 제작)’
- 지정일 : 1971.2.24.(현악기 제작 보유자 인정일)
- 전승자 현황 : 보유자 3[고흥곤('51/'97.3.24.), 고수환('50/'23.7.27.), 표태선('61/'23.7.27.)]  
전승교육사 2[김영렬('50/'04.3.20., 이동윤('56/'95.8.1.)]

[북 제작, 편종·편경 제작 전승자 현황]

기·예능	구분	성명	생년	인정일	기·예능	구분	성명	생년	인정일
북 제작	보유자	이정기	'57	'12.11.20.	편종·편경 제작	보유자	김현곤	'35	'12.07.23
		윤종국	'61	'22.10.11.					
	임선빈	'50							
	전승교육사	윤 신	'63	'97.8.1.					

#### 2) 추진경과

- ('22.1.25.) 2022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 조사 계획 수립
- ('22.7.7.~8.25.) 국가무형문화재 ‘악기장(현악기 제작)’ 보유자 인정조사 공모 및 접수
- ('22.10.19.) 악기장(현악기 제작)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 실시
  - 조사자: 관계전문가 4명
  - 조사대상자: 12명
  - 조사내용 :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의 1단계 조사지표(개인종목)에 따른 전승능력, 전승환경, 전수활동 기여도 평가
  - 조사방법 : 제출 서류 및 동영상 자료 평가

- 전승환경의 전승기반 1단계 지표는 ‘전승능력’과 ‘전승환경 및 전수활동 기여도’ 적용
- ('23.1.16.) 악기장(현악기 제작)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 결과 검토
  - 고수환, 김동환, 조준석, 표태선 등 4인에 대해 2·3단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
- ('23.4월) 악기장(현악기 제작) 보유자 인정조사 2·3단계 실시
  - 조사자 : 관계전문가 4명
  - 조사대상자 : 4명
  - 조사방법 :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의 2, 3단계 조사지표(개인종목)에 따른 전승기량 및 역량, 전승기반 평가
    - 전승기량 실기능력 지표
      - 전승기량 및 역량(140점) : 실기능력(100), 종목이해도(20), 교수능력(20)
      - 전승환경(20점) : 조사대상자의 시설·장비수준(10) 및 전승의지(10)
      - \* 2, 3단계 통합조사로 2단계 조사지표 적용하되, 실기능력은 3단계 배점 적용 → 100점 만점 환산
    - 지표별 평가방법
      - ‘실기능력’은 ‘산조가야금’ 전체 제작과정으로 함
      - ‘교수능력’, ‘해당종목의 이해도’ 및 ‘전승의지’는 제작공정별 설명과 별도 면담을 통해 평가
- ('23.5.25.) 제3차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기술분과 보유자 인정예고 의결
  - 고수환, 조준석, 표태선 등 3인을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(현악기 제작) 보유자로 인정예고 함
- ('23.6.5.~7.4.)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 인정 예고(관보 제20515호)

문화재명	구분	성명	기·예능	주소
악기장 (樂器匠)	보유자 인정	고수환(高壽煥)	현악기 제작	전라북도 전주시
		조준석(曹準錫)	현악기 제작	충청북도 영동군
		표태선(表泰先)	현악기 제작	대전광역시 중구

- ('23.7.13.) 제4차 무형문화재위원회 전통기술분과 보유자 인정심의 의결
  - 고수환, 표태선 등 2인을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 보유자로 인정함
  - 조준석은 사실관계 확인 후 심의토록 함

의견 요지	문화재청 검토 의견
○문화재 전수를 받지 않는 자	○ 보유자 인정조사 공모에 신청요건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또는 이수자,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, 이수자와 그 밖의 일반전승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

의견 요지	문화재청 검토 의견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악기 제작 시 국산재료가 아닌 수입재료를 사용하여 현대방식으로 가공</li> <li>○ 국악기를 직접 제작하지 않고 하청을 주어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, 조달청 문화상품 등록 시 본인이 제작하지 않는 악기로 입찰을 받아 막대한 이득을 취한 자는 문화재 취소를 해야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유자 인정조사는 조사심의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조사지표, 조사방법에 따라 이루어지고, 조사 시 전통적 기술로 전통악기를 제작할 수 있는지 평가함. 평소 국산재료가 아닌 수입재료를 사용하여 현대방식으로 제작하는 것은 평가에 포함되지 않음</li> <li>○ 제작 하청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항은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1조(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) 사유에 부합하지 않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통문화의 공연·전시·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,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</li> </ul> </li> </ul>

**라. 검토의견**

- 사실관계 확인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무형문화재 ‘악기장’ 보유자 인정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

**마. 의결사항**

- 가결함
  - 조준석을 국가무형문화재 ‘악기장(현악기 제작)’ 보유자로 인정함
- 의결정족사항 : 출석 7명, 가결 7명